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84

발의연월일: 2021. 4. 19.

발 의 자:김경만・김수흥・홍성국

신정훈 · 김정호 · 이용빈

이규민 · 강선우 · 김홍걸

양기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매입해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1 03분의 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한 시점의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할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출 당시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재활용폐자 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 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자동차해체재 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 여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3분의 3"을 "103분의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경우 11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례) 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 12월 31일-----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 1. -----103분의 3 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경 우 110분의 10).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